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고 2026-제243호

## 2026년도 제6차 직원(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제주형 지역산업생태계 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선도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 1

### 채용개요

- 채용인원: 총 17명 (16개 분야)
- 임용기간
  - 일반계약직: 임용일로부터 1년 11개월 이내
  - 위촉계약직: 임용일로부터 해당사업의 종료일
-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1. 2.(월) 18:00까지
- 지원방법: [붙임2] 입사지원서 등 서류작성 후 이메일 제출 [recruit1@jejutp.or.kr](mailto:recruit1@jejutp.or.kr)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2026-6차 채용지원] 홍길동(지원자 이름)
- 문 의 처: 제주테크노파크 인재경영팀 김소연 연구원 (064-720-3064)

## 2

## 모집분야 및 인원

| No. | 모집<br>구분 | 지역<br>제한 | 모집부서                              | 모집분야<br>(관련계열(학과) / 관련경력)                                  | 직급       | 직군  | 모집<br>인원 | 임용기간                |
|-----|----------|----------|-----------------------------------|------------------------------------------------------------|----------|-----|----------|---------------------|
| 1   | 일반<br>계약 | 전국       | 정책기획단 산업기획팀                       | 사업운영관리<br>(전분야/정부사업수행경력)                                   | 5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2   | 일반<br>계약 | 제주<br>지역 | 정책기획단 신사업기획팀                      | 사업운영관리<br>(전분야/정부사업수행경력)                                   | 5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3   | 일반<br>계약 | 제주<br>지역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바이오센터 식품사업팀          | 식품분야사업운영지원<br>(전분야/해당사항없음)                                 | 5급<br>상당 | 일반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4   | 일반<br>계약 | 제주<br>지역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바이오센터 화장품사업팀         | 사업운영, 팀 업무수행<br>(전분야/행정업무)                                 | 5급<br>상당 | 일반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5   | 일반<br>계약 | 전국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생물종다양성연구소<br>생물자원연구팀 | 식물자원 및 배양관리보조<br>(이공계열/이공계열경력)                             | 5급<br>상당 | 일반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6   | 일반<br>계약 | 전국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생물종다양성연구소<br>천연소재개발팀 | 기능성화장품 소재개발<br>(이공계열/이공계열경력)                               | 5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7   | 일반<br>계약 | 전국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생물종다양성연구소<br>미생물산업화팀 | 바이오소재 생산 및 장비운영관리<br>(이공계열/이공계열경력)                         | 5급<br>상당 | 기술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8   | 일반<br>계약 | 전국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용암해수센터 산업육성팀         | 용암해수활용 해조류 배양<br>(이공계열/해조류배양경력)                            | 5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9   | 일반<br>계약 | 전국       | 미래융합사업본부<br>미래산업센터 미래신산업팀         | 사업기획 및 관리운영<br>(전분야/행정, 사업관리)                              | 5급<br>상당 | 연구직 | 2        | 임용일<br>~1년11개월      |
| 10  | 일반<br>계약 | 전국       | 미래융합사업본부<br>에너지센터 배터리산업팀          | 인력양성사업운영, 시험지원<br>(전분야/정부사업·관련산업분야 경력)                     | 5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11  | 일반<br>계약 | 제주<br>지역 |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 재무회계<br>(전분야/재무회계 관련경력)                                    | 5급<br>상당 | 일반직 | 1        | 임용일<br>~1년11개월      |
| 12  | 위촉<br>계약 | 전국       | 제주RISE센터 기획운영부<br>혁신기획팀           | RISE센터사업운영<br>(전분야/정부과제·<br>대학재정지원사업 경력)                   | 4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2030.2.28.  |
| 13  | 일반<br>계약 | 전국       | 제주RISE센터 기획운영부<br>혁신기획팀           | RISE센터사업운영<br>(전분야/<br>정부과제·대학재정지원사업 경력)                   | 5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1년 11개월     |
| 14  | 위촉<br>계약 | 전국       | 제주RISE센터 사업지원부<br>대학지원팀           | 앵커사업 운영 및 관리 및<br>RISE센터사업운영<br>(전분야/<br>정부과제·대학재정지원사업 경력) | 5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2030.2.28.  |
| 15  | 일반<br>계약 | 전국       | 제주RISE센터 사업지원부<br>글로벌 K교육연구추진팀    | 앵커사업 운영 및 관리 및<br>RISE센터사업운영<br>(전분야/<br>정부과제·대학재정지원사업 경력) | 4급<br>상당 | 연구직 | 1        | 임용일<br>~1년 11개월     |
| 16  | 위촉<br>계약 | 제주<br>지역 | 제주지식산업센터(TF)                      | 지식산업센터 관리<br>(전분야/<br>시설관련 경력,<br>민간업체·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       | 4급<br>상당 | 기술직 | 1        | 임용일<br>~2027.11.30. |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분야 관련학과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3

## 응시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

## □ 공통 응시자격 (10p 관련근거 ‘결격사유’ 참고)

- 1)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2) 성 별: 제한없음
- 3) 거주지 제한(제주지역 인재모집 분야)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2026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미포함)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② 2026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미포함)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4)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 5) 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 규정 제1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직급별 자격요건

| 직급   | 자격기준                         |                                         |
|------|------------------------------|-----------------------------------------|
| 4급상당 | ① 박사학위 취득자                   | 모집분야 관련계열(학과)에 부합하여야 함                  |
|      | ②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②~④: 모집분야 관련계열(학과)과 유사분야(경력) 모두 부합하여야 함 |
|      | ③ 학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
|      | ④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
|      | ⑤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모집분야 관련분야(경력)와 부합하여야 함                  |

|      |                                         |                                    |
|------|-----------------------------------------|------------------------------------|
| 5급상당 | ① 학사 이상의 졸업자격을 가진 자                     | 모집분야 관련계열(학과)에 부합하여야 함             |
|      | ②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모집분야 관련계열(학과)과 유사분야(경력) 모두 부합하여야 함 |
|      | ③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유사분야 경력자              | 모집분야 유사분야(경력)와 부합하여야 함             |
|      | ④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학위취득 및 경력증명 등 기준일: 공고 시작일의 전일 (2026.10.12.)

※ 공고일 기준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6개월 미만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보수수준(연봉)

- 4급 상당: 3,330만원 ~ 4,221만원

- 5급 상당: 2,780만원 ~ 3,506만원

※ 상기금액은 기본급과 명절수당 등을 포함한 연간 보수 예시이며, 개인별 경력 및 보수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법정수당은 법인 내규에 의하여 별도지급)

□ 근무일: 주 5일 (월~금)

□ 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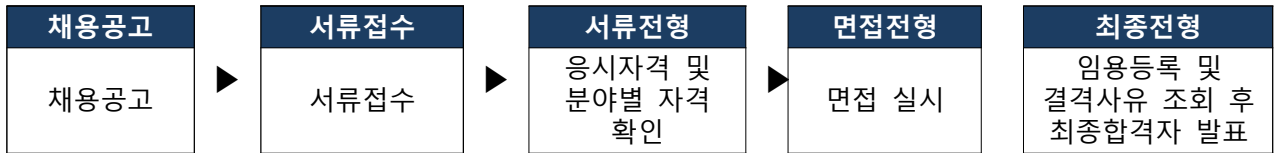
□ 근무장소 ※ 근무 장소는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서                        | 근무지                                  |
|---------------------------|--------------------------------------|
| 정책기획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9층 정책기획단        |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바이오센터 식품사업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바이오센터 2호관     |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바이오센터 화장품사업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바이오센터 1호관      |
| 청정바이오사업본부<br>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338,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용암해수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용암해수센터 |
| 미래융합사업본부 미래산업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미래산업센터          |
| 미래융합사업본부 에너지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에너지센터           |
|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9층 경영지원실        |
| 제주RISE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24, 산학협력관 2층      |
| 지식산업센터(TF)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095, 제주지식산업센터      |

## 4

## 채용절차 및 시험방법

### □ 채용절차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Zero Base에서 평가

### □ 1차: 서류전형

○ 심사항목: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 응시자의 자격기준, 관련계열, 관련분야 등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사항 심사
- 응시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이 불성실한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사위원: 채용운영 관리지침 제4조(서류전형) 의거,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 외부 위원 1/2 이상으로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 합격배수: 적격자 전원

○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게시

### □ 2차: 면접전형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기준: 업무능력, 경력 및 실적, 실무기여도, 조직적응도 등

○ 심사위원: 제주테크노파크 면접전형위원회

\* 외부 위원 1/2 이상으로 면접전형위원회 구성

○ 시험방법: 역량면접(다대다 또는 다대일)

○ 합격점수: 60점 이상

○ 합격배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배수 추천

○ 점수집계방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심사위원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여 산술평균

※ (예시) 면접위원별 총 배점이 100점이고 5가지 항목별 배점이 각 20점인 경우

| 'A'응시자 | 합계 점수<br>(점수/배점) | 가 위원  | 나 위원  | 다 위원  | 라 위원  | 마 위원  |
|--------|------------------|-------|-------|-------|-------|-------|
| 합 계    | 75.65/100점       | 14.66 | 16.33 | 15.66 | 13    | 16    |
| 가항목    | 14점/20점          | 18 최고 | 16    | 10 최저 | 11    | 15    |
| 나항목    | 15.33점/20점       | 15    | 19 최고 | 17    | 11 최저 | 14    |
| 다항목    | 12.33점/20점       | 12    | 17 최고 | 15    | 10    | 6 최저  |
| 라항목    | 17.33점/20점       | 11 최저 | 15    | 19 최고 | 18    | 19    |
| 마항목    | 16.66점/20점       | 17    | 18    | 15    | 11 최저 | 20 최고 |

###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평가항목 ( ‘업무능력’ → ‘경력 및 실적’ → ‘실무기여도’ → ‘조직적응도’ ) 순서로 항목별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득점순으로 동점자 처리

### ○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게시

## □ 3차: 최종전형

- 법인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조회
- 관련분야 교육사항 등 응시서류 검토(허위기재 등 확인)
-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경력) 증빙 검토
-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 게시

### ※ 면접전형 심사기준 및 배점방법

| 평가항목    | 주요평가내용                                                                                                                                                         | 점수  |
|---------|----------------------------------------------------------------------------------------------------------------------------------------------------------------|-----|
| 업무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 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식</li> <li>·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정보습득 정도</li> <li>·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li> <li>· 적극성, 추진력 정도</li> </ul> | 30  |
| 경력 및 실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 실무경력 적합성 정도</li> <li>· 직무관련 실무경력 축적 정도</li> <li>· 실적의 우수성 정도</li> <li>· 실적의 독창성 정도</li> </ul>                    | 25  |
| 실무기여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과제) 목표달성에 기여 가능성 여부</li> <li>· 전문지식과 경력이 해당 직무에 직접 활용 가능성 정도</li> <li>· 기타 조직 발전기여 가능성 정도</li> </ul>               | 25  |
| 조직적응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태도규범, 질서, 준법 의식</li> <li>·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 의식</li> <li>· 원만한 대인관계</li> </ul>                                       | 20  |
| 합계      |                                                                                                                                                                | 100 |

## 5

## 예비합격자 제도

- 운영 취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또는 임용 유효기간 내 면직·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규모: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채용 인원수 포함)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예비합격자 지위 상실)
- 예비합격자는 채용분야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관리하며, 결원 발생 등 임용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 6

## 가점사항

| 대상                                              | 가점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b>취업보호대상자</b> |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b>장애인</b>               | 면접전형 만점의 5%     |

- 가점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1개만 인정함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은 관련 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르며, 그 외에는 면접전형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부여
- 상기의 가점사항은 증명서 및 확인서 양식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카드 또는 수첩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불가
- 가점 적용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여야 하며, 지원자격 증빙 제출기간 내 접수되어야 함
- 자격증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작성시 유의

| 주요일정                                      | 구 분                      | 비 고                                                                                                                                       |
|-------------------------------------------|--------------------------|-------------------------------------------------------------------------------------------------------------------------------------------|
| · 2026. 10. 13. (화)<br>~ 11. 2. (월) 18:00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붙임2] 입사지원서 등 서류작성 후 <b>이메일 제출</b><br>이메일: <a href="mailto:recruit1@jejutp.or.kr">recruit1@jejutp.or.kr</a><br>· 접수마감 이후 이메일로 응시번호 개별통보 |
| · 2026. 11. 4. (수)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기준 적격여부 심사<br>· 관련계열, 관련분야 등을 검토 후 적격여부 결정                                                                                         |
| · 2026. 11. 5. (목)                        | 서류전형 결과 및<br>면접전형 대상자 통지 | · 합격여부: 기관 홈페이지 공고 (응시 접수번호로 발표)<br>· 면접세부일정: 개별통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
| · 2026. 11. 9. (월)                        | 면접전형                     | · 다대일 또는 다대다 면접 & 질의응답                                                                                                                    |
|                                           | 지원자격<br>증빙서류 제출          |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br>가점사항 증빙 서류 등 제출 ( <b>면접당일 직접제출</b> )                                                                           |
| · 2026. 11. 10. (화)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 기관 홈페이지 공고 (응시 접수번호로 발표)                                                                                                                |
| · 2026. 11. 11. (수)                       | 최종전형 서류 제출<br>(임용등록)     | · 신원진술서, 학위논문요약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br>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필수제출서류 제출 ( <b>방문제출</b> )<br>(제출장소: 제주벤처마루 903호 경영지원실)                                   |
| · 2026. 11. 13. (금)                       | 최종전형                     | · 결격사유조회, 응시서류 확인<br>·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의 경우<br>면접전형 합격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 합격처리                                                                  |
| · 2026. 11. 17. (화)                       | 최종합격자발표                  | · 기관 홈페이지 공고 (응시 접수번호로 발표)                                                                                                                |
| · 2026. 11. 19. (목)                       | 임용(예정)일                  | · 출근일에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세부 전형절차 및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기관 홈페이지([www.jejutp.or.kr](http://www.jejutp.or.kr))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기재착오·누락·미비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공모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이후 임용을 위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그 결과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또는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사유 발생 시 최종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 순번에 따라 모집예정인원 2배수 범위 내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채용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한 경우 서류 기재사항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직접 제출한 증빙서류의 반환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내 이메일([insa@jejutp.or.kr](mailto:insa@jejutp.or.kr))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 별도 청구가 없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전형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시 본 재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해당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외국어 작성 시 한글 번역본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 제주테크노파크의 근무경력자가 공개채용으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전 근로기간은 제외(단절)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됩니다.

※ 유의사항 확인 소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오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문의처

- 문의처: 제주테크노파크 인재경영팀 인사담당자 김소연 연구원(☎: 064-720-3064)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ejutp.or.kr>

**제주테크노파크는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                                                                                                                                                                                                                                                                                                                                                                                                                                                                                                                                                                                                                                                                                                                                                                                                                                                                                                                                                                                                                                                                                                                                                                                                                 |
|----------------------------|-----------------------------------------------------------------------------------------------------------------------------------------------------------------------------------------------------------------------------------------------------------------------------------------------------------------------------------------------------------------------------------------------------------------------------------------------------------------------------------------------------------------------------------------------------------------------------------------------------------------------------------------------------------------------------------------------------------------------------------------------------------------------------------------------------------------------------------------------------------------------------------------------------------------------------------------------------------------------------------------------------------------------------------------------------------------------------------------------------------------------------------------------------------------------------------------------------------------|
| 차별금지                       | <b>제6조(균등한 처우)</b><br>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 <국가공무원법>                   |                                                                                                                                                                                                                                                                                                                                                                                                                                                                                                                                                                                                                                                                                                                                                                                                                                                                                                                                                                                                                                                                                                                                                                                                                 |
| 결격사유                       | <b>제33조 (결격사유)</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li> <li>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li> </ol> <b>6의2.</b>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b>6의3.</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br>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br>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br><b>6의4.</b>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br>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br>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br>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br>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br><b>7.</b>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b>8.</b>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계약기간                       | <b>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담당)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임용기간 중 부득이하게 해당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중단, 협약해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됨)</li> <li>※ 위촉계약직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1호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한 사업(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채용된 직원 : 협약(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추후 조정될 수 있음</li> </ul> </li> <li>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하 생략)</li> </ol> </li> </ol>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
|----------------------------------|---------------------------------------------------------------------------------------------------------------------------------------------------------------------------------------------------------------------------------------------------------------------------------------------------------------------------------------------------------------------------------------------------------------------------------------------------------------------|
| 사전협의                             | <b>채용계획 수립</b><br>가. 채용계획 사전협의<br>- 기관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 등에 대해 설립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 사전협의 생략가능<br>- 자치단체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는 모두 문서로 한다.)<br>-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함<br>-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기준」> |                                                                                                                                                                                                                                                                                                                                                                                                                                                                     |
| 채용조건                             | <b>제23조(직원의 인사)</b><br>① 사업시행자는 직원의 신규 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③ 사업시행자는 경력 및 전문분야 인력의 필요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br>④ 정규직,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1개월 이상의 한시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한다.                                                                                                                                          |
| <(재)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              |                                                                                                                                                                                                                                                                                                                                                                                                                                                                     |
| 신규채용<br>조건<br>·<br>채용원칙          | <b>제13조(신규채용)</b><br>① 법인은 경영진과 직원이 파견·휴직·면직·파면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이 확대된 경우에 한정하여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br>② 법인은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원외 인력, 출산·병가·휴가·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결격사유                             | <b>제14조(결격사유)</b><br>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 될 수 없다.<br>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br>3.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br>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br>②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진 경우,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재)제주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                                                                                                                                                                                                                                                                                                                                                                               |
|---------------------|-------------------------------------------------------------------------------------------------------------------------------------------------------------------------------------------------------------------------------------------------------------------------------------------------------------------------------------------------------------------------------|
| 위촉계약직<br>채용 관련근거    | <p><b>제6조의2(위촉직 채용)</b></p> <p>① 원장은 인사관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인건비 책정여부, 채용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p> <p>② 위촉직원을 채용할 경우 협약이 확정된 사업이어야 하며 채용기간은 당해 사업의 협약서상 사업기간으로 한다. 단, 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채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b>제11조(계약의 종료와 해약)</b></p> <p>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다.</p> <p>5. 사업의 종료, 사업 협약해지, 중단, 조기완료 등으로 종료된 때</p> |